

청주지방법원 2021. 6. 9 선고 2020가단3517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5. 12.

판 결 선 고 2021. 6. 9.

주 문

1.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2. 17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9. 12. 17. 접수 제1356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 내지 8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.

○ 원고는 주식회사 C(이하 ‘C’이라 한다)과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C에 실리콘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, 2019. 12. 17.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은 60,650,660원이었다.

○ C은 2019. 12. 17. 피고에게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매도하고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,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9. 12. 17. 접수 제135610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○ C은 2019. 12. 17.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 6,650,66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던 C이 당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는바, 이러한 C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, 이 경우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는 추인되므로,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.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최지현

별지

목 록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[도로명주소]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의 번호:

구 조: 철근콘크리트구조

면 적: 48.4238㎡

대지권의 표시

토지의 표시: 1.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2358.6㎡

대지권 종류: 1. 소유권 대지권

대지권 비율: 2358.6분의 6.8842

2. 1동의 건물의 표시

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[도로명주소]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의 번호:

구 조: 철근콘크리트구조

면 적: 48.4238㎡

대지권의 표시

토지의 표시: 1.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2358.6㎡

대지권 종류: 1. 소유권 대지권

대지권 비율: 2358.6분의 6.8842

끝.